

의안번호	제 2761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균 수
제출연월일	2024. 4.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준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761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1.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정책 환경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의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23. 5. 16. 공포 / ‘24. 5. 17. 시행) 연계된 법률이 동시 시행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국가유산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

- 1)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 변경
(안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
- 2)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
(안 제1조·제2조·제5조·제10조·제12조)

나.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

- 특이사항 없음 [복지지원과-8519(2024. 2. 27.)]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366호

가) 예고기간: 2024. 2. 26. ~ 2024. 3. 18.(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준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
다.

제3조(「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를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무형문화재의”를 “국가무형유산의”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7조(「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한다.

제8조(「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1조(「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제1호바목 중 “공원/관광/문화재안내”를 “공원/관광/국가유산안내”로 한다.

제12조(「고성군계획 조례」의 개정)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13조(「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성

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개정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0.00.00.>

열 략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성별	남/여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비고		
열람일시	년 월 일						
열람인원	본인 외()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	연번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1		남/여			
		2		남/여			
		3		남/여			
열람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논문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연구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고성군수 귀하</p>							
구비서류	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전시소장품 열람 조건

1. 허가 대상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 할 때
-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2. 제한 대상

-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열람 시 준수사항

-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1. ~ 10. (생 략)</p> <p>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p> <p>12. · 13. (생 략)</p>	<p>제19조(답례품의 종류) ①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p> <p>12. · 13. (현행과 같음)</p>

제2조(「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u>문화재보호구역</u>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u>문화유산</u> <u>로</u> ----- ----- ----- <u>문화유산</u> <u>보호구역</u>안----- --.</p>

제3조(「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 6. (생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국가유산</u> --- ----- 6. (현행과 같음)

제4조(「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동등재추진단) 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문화재청장</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공동등재추진단) ① ----- ----- ----- ----- <u>국가유산청장</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가무형 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u>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및 「<u>지방자치법</u>」 제161조에 따라 설치한 <u>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가무형 유산</u>의 ----- ----- 「<u>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 ----- <u>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전수교육관</u>”이란 <u>문화재청</u>장이 지정한 <u>국가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 시설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국가유산청</u>장이 지정한 <u>국가무형유산</u>----- -----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치) <u>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이하“<u>전수관</u>”이라 한다)은 <u>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571</u>과 <u>고성군 상리면</u></p>	<p>제3조(위치) ----- <u>국가무형유산</u>----- ----- -----</p>

척번정7길 26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5. (생략)

제5조(운영) 군수는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

제4조(업무 및 기능) -----
-----.

1. 국가무형유산 -----

--
2. 국가무형유산 -----

3. 국가무형유산-----

4. 5.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
----- 국가무형유산 -----

-----.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
국가무형유산-----

-----.

제8조(위탁 운영) ① -----

<p>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6조(「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u>문화재</u>를 말한다.</p> <p>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u>문화재</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 ----- <u>국</u> <u>가유산</u>을 --.</p> <p>2. ----- ----- ----- -- <u>국가유산</u>을 --.</p>

제7조(「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지원대상은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생략)</p> <p>2. 고성군 대표축제가 개최되거나 <u>문화재</u>가 있는 지역 또는 연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과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일 것</p> <p>② (생략)</p>	<p>제25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국가유산</u>이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8조(「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생략)</p> <p>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u>문화재</u>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국가유산</u>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9조(「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의 화재, 붕괴, 폭발 5. ~ 10. (생략) ③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국가유산</u> ----- 5.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생략) ②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u>문화재보호법</u> 」에 의한 <u>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u> 과 「 <u>자연환경보전법</u> 」에 의한 <u>생태·경관보전지역</u> 2. ~ 16. (생략)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u> ----- ----- 2. ~ 16. (현행과 같음)

3. (생략)

⑤ ~ ⑦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열람허가신청서										열람허가신청서									
									차량										차량
									즉시										즉시
신청인	성명	성별	남/여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성별	남/여	전화번호					
주소										주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비고				등록번호	명칭			수량		비고			
열람일시										열람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열람인원	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	연번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열람인원	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	연번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1		남/여								1		남/여					
		2		남/여								2		남/여					
		3		남/여								3		남/여					
열람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논문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연구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열람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논문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연구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전시소장품 열람 조건										전시소장품 열람 조건									
1. 허가 대상										1. 허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계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신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2. 제한 대상										2. 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열람 시 준수사항										3. 열람 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05.17.] [법률 제19409호, 2023. 05. 1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 9. 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1. 23.>

⑥ ~⑬ (생략)

부칙<법률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법률 제19588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부칙 <법률 제19588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9.15.] [법률 제19702호, 2023. 09. 1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3.>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